

창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나58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나58588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0. 11 선고 2016가단109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 선고 2017. 5. 3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0. 11. 선고 2016가단109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8. 21. 접수 제24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중래

판사이호선

판사김재윤

별지